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이외 시·도지사는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붙인 경미하거나 주관적인 허가조건을 최초로 위반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됨에 따라 처리업자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시·도지사가 붙인 허가조건을 최초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아닌 경고처분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해당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를 제외한 단순·경미한 유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9)나)(1) 위반행위란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9)나)(2) 위반행위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설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누출
· 유출된 경우
- (2) 보관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9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